

결산검사의견서

제천시장 귀하

2007년 5월 3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로부터 제천시 200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07년 5월7일부터 5월26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와 더불어 특히,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분야별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심층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중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 아월비 및 사고아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박 성 하 (인)

위 원 권 오 성 (인)

위 원 안 홍 식 (인)

2006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I.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전년도 | 273,879,563,000 | 371,440,455,080 | 363,375,279,510 | 613,348,990 | 7,451,826,580 |
| 당해년도 | 362,412,107,280 | 377,690,756,760 | 368,808,064,750 | 1,007,850,700 | 7,874,841,310 |

○ 세입결산개요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로서 6,395,957,4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함.

○ 수납액 계정 및 세입과목 적용 등은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5.6%인 423,014,730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분야 검사결과

- 어린이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 200,000,000원이 회계연도 내 자금을 교부 받지 못해 자금없는 이월을 하였음.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수령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교통팀>

-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처리비용(86,000원/톤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바, 이용자의 의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수료 조정 등 필요(수익자부담원칙).<생활환경팀>

2. 세 출

(단위: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전년도 | 273,879,563,000 | 86,916,563,000 | 360,796,126,000 | 288,923,144,260 | 61,607,235,280 | 10,265,746,460 |
| 당해년도 | 300,804,872,000 | 61,607,235,280 | 362,412,107,280 | 283,531,919,550 | 63,577,462,550 | 15,302,725,180 |

○ 세출결산

예산액은 300,804,872,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1,607,235,280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362,412,107,28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5,302,725,18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의 지급사유미발생과 전국대회유치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등에 기인함.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분야별)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분야]

- 보육시설(5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정산함에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명확한 원장이 없으며, 지출증빙에 대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담당공무원 한사람으로 보육시설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업무분장 등 재검토 바람.<여성유소년팀>
-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정산을 함에 있어 공기관임에도 지출증빙서류가 정규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정산검사가 이루어졌음(41건).
향후,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평생학습팀>
- 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증빙에 대한 원가(단가) 자료 및 세부지출내역이 미비하며,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 하겠음.<축제영상팀>

[민간자본보조 분야]

- 저온저장시설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천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로 사업추진함에도, 대부분 타지역업체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업정산의 경우 시설설치에 따른 세부정산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받아 정산하는 등 다소 소홀하였음.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농축유통팀>
-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보조금 50% 자부담 50% (건물주25%, 사업자25%)의 사업비(1억원)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정산 내역을 보면 자부담관계가 불명확하게 정산된 사실이 있어 주의를 촉구함.
향후, 사업추진시 자부담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건축팀>

-댐지원사업비로 2006년도에 마을경로당 물품구입 건에 대한 현지검사 결과 같은 물품(예/안마의자)에 대해 마을별로 구입가격이 차이를 보였으며, 구입된 대부분의 물품이 방치 되는 등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집행부에서는 특수물품 구입분야에 대한 보조금검사와 계약자의 국세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정조치 하기 바람.<법무감사팀>

또한, 앞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채정하여 지원하고, 철저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확행토록 주의바람.<경로재활팀>

-송학면 오미리 산촌종합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한 바, 사업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사면의 잔디붙임 다짐불량, 측백나무 고사, 자연석 쌓기 부실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지역개발팀>

[민간위탁사업분야]

-노인사랑병원 위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130병상이어야 손의분기 점이 도달됨에도 정책 입안시 판단 착오로 현재 10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검사일 현재 4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면 보험료 인하관계로 더욱더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현대병원과 노인사랑병원 운영체인 웅포재단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운영하여 투명성확보 및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하겠음.<보건운영팀>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각종 지출서류 증빙서가 미흡한 상태로 지출되는 등 전반적인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위탁사업비를 교부하는 기관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시립도서관>

[공사분야]

-산림대집행사업(금성면 활산리, 백운면 방학리)을 점검한 결과 다집이 되어 있지 않고 둘망태, 석축, 집수정 등이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한 개소가 다수 있음. 이는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감독 소홀이라 생각됨.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산림관리팀>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일 발전용량 90kw로 96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장점사일(5월11일) 현재 68kw 생산하고 있었음. 사업수혜로 연간 1천만원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으므로 추후 유사사업시 사전 성과검토를 필히 하시기 바람.

<교통팀, 지역경제팀>

-청풍명월하키장 수해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침수되었던 지하만을 공사하고 있고 상단(壇上)부분의 누수되는 곳은 방치하고 있음. 지하공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여도 상단부분 보수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상단(단상)부분도 함께 하자 보수하여야 할 것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

현재 시내버스 보조는 유류, 비수익노선결손, 벽지노선결손, 사업재정적자보조, 공영버스 및 저상버스 구입보조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조를 위하여 보조사업별로 개선책이 요구됨.

-비수익노선결손 보조는 현재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버스사업자의 1일 승차수입금을 산출할 때 노선별 기준 아닌 버스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출에 문제가 있음.(동일버스가 A노선과 B노선을 중복 배차되는 경우 버스기준으로 1일 수입금을 집계하기 때문에 노선기준 1일 수입금 산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시내버스 사업자가 1일간 동일노선에 투입된 모든 버스의 승차 수입금을 집계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함.

- 재정적자 보조는 현재 재정적자지원금은 비수익노선결손금과 할인손실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고, 비수익노선 결손금은 적정수입금에서 승차 수입금을 제한 금액으로 산출됨. 그러나 승차수입금 할인된 학생요금이 포함되어 비수익노선 결손금이 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해 준 손실금을 중복으로 합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설례)

(단위:천원)

| 적정수입금 | 승차구입금(학생할인수입포함) | 비수익노선결손금 |
|-----------|-----------------|----------|
| 1,357,917 | 533,630 | 824,287 |

*비수익노선결손금(824,287천원)+할인손실금(70,815천원) = 895,102천원(재정지원금)

따라서 버스사업자의 재정적자지원금산출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됨.

또한, 재정적자 지원보조에서 산출항목이 『비수익노선 결손금』으로 되어 있는 바, 이미 비수익노선결손보조를 하고 있으므로 명칭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적자 지원보조의 『비수익노선 결손금』 명칭은 변경이 필요하겠음.

- 공영버스 보조금에 있어 현재 공영버스 지원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으로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함. 따라서 실제 버스구입비 외에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등까지 보조해주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버스구입비만을 보조하고 등록세를 포함한 기타부대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충북도에서 지시한 공영버스의 시장소유와 버스구입비와의 등록세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요구됨(도운영지침-10년전의 규정임)
충북도 운영지침대로라면 공영버스를 시장소유로 하게 될 경우 소유주(시장)와 사용자(버스사업자)간의 명확한 책임관계나 세금문제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하며, 현재 운행중인 한대의 저상버스는 실제 이용 장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유류비도 일반버스의 1.5배나 소요되고 저상버스의 규격이 커서 좁은 도로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저상버스구입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제천시뿐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자도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임.

따라서 저상버스구입은 지자체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 대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여야 할 것임.<교통팀>

[시내버스 경영에 관한 개선권고]

○ 현황

- 인구감소 및 자가용증가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수익금은 매년감소(약8%정도)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인 증가
 - ▶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지원 등
- 적자운영 및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체관리 인력구조 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 양 업체의 시내버스 운행여건은 동일하나 임·직원수 불균형에 따른 업체의 인건비 등 부담

<임원 및 직원현황>

(2007. 5. 25현재)

| 업체명 | 합계 | 임원 | 사무직 | 정비·청소 | 운전사 | 비고 |
|---------|-----|----|-----|-------|-----|-----------|
| 계 | 146 | 10 | 15 | 20 | 101 | |
| 제천운수(주) | 76 | 6 | 9 | 10 | 51 | 차량수 : 34대 |
| (주)제천교통 | 70 | 4 | 6 | 10 | 50 | 차량수 : 34대 |

- 운송수익 감소에 따른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대민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지적사항

- 양 업체의 과다한 임·직원수 불균형 문제 검토 필요
- 운행여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각종 지원금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봄(업체간 서비스경쟁력 제고 필요)

○ 요구사항

- 사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및 종사인력 조정 유도
 - ▶ 임원 및 사무직 근무인력 과다(업체간 균형유지 필요)
-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에 미온적인 업체는 각종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교통팀>

[기타분야]

-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행 평가기준은 개인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 모두 같은 점수를 주는 등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법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을 모색하기 바람.<인적자원팀>
- 금연클리닉사업 중 금연보조제를 구입함에 있어 연간사업비(64백만원)로 지역 제한 공개경쟁 입찰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응찰한 곳이 3개업체이고 낙찰율 또한 95%로 담합의 우려가 있는 바, 일시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월별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검토를 제안함.<건강증진팀>
-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지원되는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메뉴얼 등 지침화하여) 지원하여 주기 바람.<보건운영팀>
- 에코세라피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 8월말까지 지구지정(봉양읍 삼거리)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 해당부서에서는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한방산업팀>
- 학술용역에 있어 용역성과품이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활용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용역발주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설용역중 50백만원 미만은 자체설계하고 50백만원이상 100백만원 미만은 조사측량용역 일부만, 100백만원이상은 실시설계 발주도록 (2006년 예산운영지침) 하고 있음에도 외주용역 발주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자체설계 확대 등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전략사업팀>

- 자원관리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축구공원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임.<문화체육팀>
- 조건부 심의를 받은 2007이후 투용자 사업(10여건)은 반드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바람.<기획예산팀>
- 박달재휴양림 운영에 있어 예비등록제 및 독립채산제도 도입,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산림관리팀>
- 청풍호반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TV, 라디오, 신문 광고비로 28백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되었음.
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함.<혁신흥보팀>
-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또 주어야 하므로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축제영상팀, 시민복지팀>
- 제천시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일일 총 872부를 구독하고 있음. 현재는 부서별 신문구독을 하고 있으나, 혁신흥보팀에서 총괄 부수 및 부서별 부수를 조정하여 구독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함.<혁신흥보팀>
- 제천시장학회 운영에 있어 출연금 조성을 위한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평생학습팀>
- 제천시 소유의 번지점프 시설은 현재 오벌클래스사와 3년계약으로 임대료 (59,612,480원/년, 부가세별도)로 위탁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도에 제천시에서 번지점프대의 수리(도색작업)비로 20백만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였음. 따라서 현재 위탁사업계약서 조항에 시설물파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예산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관광시설관리소>

- 고용촉진 훈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훈련생들에게 개인별 카드를 지급하여 실제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율 80%이상인 훈련생들에게 월 50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별 카드로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대리출석의 문제등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바, 훈련생들의 “자필서명”을 통한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요구됨.<지역경제팀>

II. 특별회계

1. 세입

(단위: 원)

| 구 분 | 세입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전년도 | 62,638,973,000 | 66,871,649,690 | 63,238,797,410 | 1,158,261,060 | 2,474,591,220 |
| 당해년도 | 50,625,206,000 | 57,134,587,390 | 54,630,188,930 | 27,900,000 | 2,476,498,460 |

○ 세입결산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외 8개)의 수납액은 54,630,188,93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4,004,982,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상이전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5.6%로 전년대비 1.1%증가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07년 7월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된데 기인함. 불납 결손액은 27,900,000원으로서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인 2,476,498,460원으로서 이는 주로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기인한 것임.

○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 조례규정 미시행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2005. 4. 1.(조례 제683호) 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욕탕)을 개정된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 2005. 5월부터 2007. 5월 현재까지 약 287백만원정도를 과소 징수하였음.

이는 하수도 징수기관의 기본업무를 미이행한 사례이며, 집행부의 확인감사로 문제 및 시정을 요구함.<법무감사팀>

2. 세 출

(단위:원)

| 구 분 | 예 산 액 | 예 산 성 립 후 증 감 액 |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전 년 도 | 42,611,904,000 | 20,027,069,000 | 62,638,973,000 | 15,474,127,400 | 22,936,542,000 | 24,228,303,600 |
| 당 해년도 | 27,688,664,000 | 22,936,542,000 | 50,625,206,000 | 7,402,075,940 | 304,000,000 | 42,919,130,060 |

○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외8개) 예산액은 27,688,664,000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22,936,54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50,625,20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7,402,075,940원이었으며 명시이월만 304,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택사업의 택지조성설시설계사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7%에 해당하는 42,919,130,060원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공기업전환(2006.7.1)에 따른 불용액과 타 특별회계 예비비에 기인함.

○ 세출예산 특별회계별 검사에 있어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이 9,113,840,000원에 반해 지출액은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84,849,390원(0.9%)을 지출하고 택지조성설시설계비로 304,000,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이 8,724,990,610원이 발생하였음.

특별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편입여부를 검토바람.<시민복지팀>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3,000,000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계획이 없다면 특별회계 폐지하여 일반회계 편입을 검토 바람.<지역개발팀>

III. 수법사례

○ 회계연도의 결산서 작성완료 기간이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80일 이내(2007.5.19)인 바, 제천시 회계팀은 성실하게 결산업무를 수행하여 30일 전인 2007. 4.19일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 결산서 작성을 조기에 마무리하였음.

- 2006년도의 재정견실화시책으로 건정재정지방자치단체로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상사업비 1억원과 25백만원의 상금도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상금을 절약한 사례가 있어 예산부서가 재정절약의 수범이 됨.
- 박달재휴양림 전기요금 중 가로등 사용요금을 휴양림과 분리하여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아 전기요금 절약집행.
- 농축유통팀에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에 있어 보조 사업자의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처음으로 세입조치(고추시장 자본보조)를 하여 예산을 절감한 수범적 사례가 됨.